공리와 탈무드의 유산 배분

- 공동 사업의 비용 분담 -

고대 유태인들의 지침서인 탈무드에는 세 명의 부인을 둔 남편의 유산 배분 방식이 예시되어 있다. 이 남자는 첫째 부인에게는 양 100 마리를, 둘째와 셋째 부인에게는 각각 200 마리와 300 마리를 상속하기로 약속하였다(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이었으나 남편은 결혼 시 재산 상속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정작 그가 죽은 후 남은 양이 100 마리뿐이라면 세 부인에게 균등 배분하고, 300 마리일 때는 계약분에 비례하여 나누도록 탈무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 마리일 경우에는 균등도 비례도 아닌 독특한 방식이 적용된다. 즉, 첫째 부인에게 50 마리, 둘째와 셋째 부인에게는 각각 75 마리씩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1980 년대 중반 경제학자인 오만(Aumann)과 매쉬러(Maschler)는 공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미스터리가 매우 우수한 배분 방식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재산 또는 비용을 이해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 내지 분담하는 문제는 2천여 년 전에도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수도권 광역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지하철 분당선, 그리고 47 번 국도 남태령 고갯길 구간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 분담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배분·분담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당사자간 비용 배분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식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학문적인 용어로는 공리(公理 : axiom)라고 한다. 예컨대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혜택을 받는 어느 한 쪽이라도 분담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그것이다. 또한 특정 참여자에게 분담되는 금액이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공리도 충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체로 인구 비례에 따라 사업비가 분담되는 경향이 있다.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나 형평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실제 1960 년대 중반 스웨덴 남부 지역의 18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 상수도 사업에서는 일부 도시들의 경우 할당받는 급수량을 자체 개발할 때 드는 비용보다 많은 분담액이 배분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다목적 댐 건설 비용에 대해서는 홍수 방지, 용수 공급, 관개, 발전 등 용도별 할당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용도별 주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 주체간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분리 비용 잔여 편익 지출법(the sepa-rable cost remaining benefit method)'이라고 불리는데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1930 년대 미국이 사용한 비용 배분 방식을 발전시킨 형태이나 스웨덴 상수도 사업의 예에서와 같은 문제 발생을 완벽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건설 부문에서도 지역간·국가간 공동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사업 비용 분담과 수혜의 배분 방식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해 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공리를 충족시키는 방식은 없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다. 사안별로 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김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hkim@cerik.re.kr